

소 장

원 고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 ○. ○.에 소외 ●●●로부터 매수하여 20 ○○. ○. ○.에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 2. 피고는 평소에 교류가 없던 원고의 먼 친척인데, 어느 날 찾아와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자금이 없어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명의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〇〇지방**호 (** ○ ○ 지원 **20** ○ ○ ○ ○ ○ ○ ○ ○ 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3. 그런데 피고는 상당한 기일이 흘렀음에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수소문한 결과 피고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고, 위 부동산을 헐값에 매 도하여 도피하려고 함을 알고 위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 4.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서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 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통고서

1.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갑 제4호증 토지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각 1통1. 소장부본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답 1,235㎡.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w.kla
		기 간	※ 아래(2)참조	\$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 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412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